대학자체평가규정 5-1-17

규정번호 5-1-17
제정일자 2010.3.1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9차 개정
관리부서 기획평가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이하 “대학” 이라 한다)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3.)

제2조(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3조(평가대상) 우리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등의 발전전략 및 전략과제에 연계된 추진성과를 토대로 대학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8.02.26.)

제4조(평가영역 및 기준) 자체평가의 평가영역, 평가지표 및 배점 등 평가기준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부의 평가지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8.02.26.)

1. 교육·연구 영역
2. 조직·운영 영역
3. 시설·설비 영역
4. 기타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영역(개정 2024.7.24.)

제5조(조삭제 2018.02.26.)

제5조(평가시기) 자체평가는 매 학년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조번호 변경, 개정 2018.02.26.)

제2장 평가기구

제6조(전담부서) 자체평가 기본계획 및 총괄적 업무수행은 기획실에서 담당한다.(조번호 변경, 개정 2018.02.26.)

② (개정 2017.02.27., 항 삭제 2018.02.26.)

③ (항 삭제 2018.02.26.)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번호 변경, 개정 2018.02.26.)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내·외부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11명 이내의 내부위원과 2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02.26., 2021.01.21)

③ 평가위원회는 기획실장(위원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처장, 사무처장을 당연

직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02.26., 2018.08.27., 2018.12.10., 2021.01.21)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개정 2018.02.26.)

1. 자체평가의 대상 및 항목
2. 자체평가 결과
3.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 및 제도 개선
4. 기타 자체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02.26., 2021.01.21)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항 신설 2018.02.26., 2021.01.21)

제8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신뢰성 및 적합성의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산하에 자체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번호 변경, 개정 2018.02.26.)

② 실무위원회는 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임교원 및 행정부서 직원을 위원으로 한다.(항 신설 2018.02.26.)

③ 실무위원회는 자체평가 계획(운영, 방법, 평가지표, 세부 기준 등)을 확정하며, 자체평가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8.02.26.)

제9조(회의록)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조번호 변경, 개정 2018.02.26.)

제10조(간사) 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 업무부서 팀장으로 한다.(조번호 변경, 개정 2018.02.26., 2018.08.27.)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11조(평가계획 수립) 전담부서는 자체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행정부서 및 학과에 통지한다.(개정 2017.02.27.,조번호 변경, 개정 2018.02.26.)

제12조(평가자료 제출)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학과 및 행정부서는 실무위원회에 평가자료를 제출한다.(개정 2017.02.27.,조번호 변경, 개정 2018.02.26.)

제13조(평가실시) 실무위원회는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후, 자체평가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조번호 변경, 개정 2018.02.26.)

제14조(실사) 실무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행정부서 및 학과를 실사할 수 있다.(조번호 변경, 개정 2018.02.26.)

제15조(이의신청) 평가위원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부서 및 학과에 통보하고,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재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한다.

(조신설 2018.02.26.)

제16조(평가결과 보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2.26.)

제17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자체평가의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4.09.15., 개정 2018.02.26)

② 자체평가의 결과는 행정부서 및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행·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항신설 2018.02.26)

③ 자체평가의 결과는 우리대학의 발전계획 수립, 특성화계획 및 교육· 행정체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항신설 2018.02.26)

제18조(기타)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2013.7.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5> <생략>

<6> 대학자체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②항, 12조, 13조의 “기획홍보팀”을 “평가·감사팀”으로 한다.

<7> - <30>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4호)